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391

발의연월일: 2025. 3. 26.

발 의 자:신영대·윤준병·안호영

박희승 • 전재수 • 김정호

이개호 • 박홍배 • 홍기원

이해민 • 한민수 • 강준현

김기표 · 김용만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높은 노인빈 곤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이에 따라 사적연금을 통한 보완적 노후 소득보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장기적으로 나누어 받을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수 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하일 경우 30%, 10년을 초과할 경우 4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여 장기 연금수령을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급여 계좌에서 장기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이 10.4%에 불과하여 이 제도의 효과가 미미 한 실정임. 이에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감면율을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며, 종신계약을 통해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90%까지 감면하도록 하여 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을 독려하고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29조제1항).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1항제5호의3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른 다음의 세율

실제 수령연차	세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		
10년 초과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30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 0분의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	
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	
는 세율(이하"원천징수세율"이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	5의3
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	
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	
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	
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	
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
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	른 다음의 세율
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	실제 수령연차 세율
<u>의 70</u>	연금외수령 원 10년 이하 천징수세율의
	10년 학학 전경 개월의 100분의 50
	연금외수령 원
	10년 초과 천징수세율의 100분의 30

<u>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u> <u><삭 제></u> 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 0분의 60

<u><신 설></u>

6. ~ 9. (생략)

② ~ ⑧ (생 략)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 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10

- 6. ~ 9. (현행과 같음)
- ② ~ ⑧ (현행과 같음)